

의안번호	2126029
의 퇴 인	정경희 의원
회 답 일	2023.12.11.
추계번호	23C4764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교육부 소관의 법정법인으로 변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8억 7,900만원(연평균 1억 7,600만원)으로 추계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¹⁾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설립준비위원회 (부칙 안 제2조)	15					15	3
이사회 (안 제8조)	10	20	20	20	20	90	18
상임감사 (안 제6조)	80	165	170	176	182	774	155
합 계	105	185	190	196	202	879	176

주: 1) 설립준비위원회가 6개월 동안 활동한 뒤 하반기 6개월 동안 상임감사 및 이사회가 활동하는 것으로 가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법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의무규정
2	안 제3조(설립)	(제1항) 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항) 평가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3	안 제5조(사업)	(제1항) 평가원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및 평가 2.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과용 도서의 개발 및 검·인정업무의 지원 3.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업성취기준의 연구·개발 4. 학업성취도 평가도구의 개발 및 문제은행 체제의 구축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5. 각종 교육 및 심리검사 도구의 연구·개발 6.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학력평가시험의 출제·시행 및 채점 7. 교육과정 및 학력평가제도 발전방안의 연구 및 외국과의 비교 8. 교육과정 및 학력평가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자료의 발간과 이에 따른 수익사업 9.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거나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2항) 평가원의 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업의 일부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재량규정
4	안 제6조(임원)	(제1항) 평가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및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제2항)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항) 이사장·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제4항) 원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5항) 감사는 평가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의무규정
5	안 제8조(이사회)	(제1항) 평가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이사회를 둔다. (제2항)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제3항)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4항) 이사장은 원장을 겸할 수 없다. (제5항)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항)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6	안 제9조(원장 등)	(제1항) 평가원에 원장 1명과 직원을 둔다. (제2항) 원장은 평가원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항)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항)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의무규정
7	안 제11조(운영 자원)	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설립·운영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교육과정 및 학력평가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자료의 발간 등에 따른 사용료·수수료 및 수익금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그 밖의 수입금	
8	안 제12조(출연금)	(제1항) 정부는 평가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량규정
9	안 제13조 (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평가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평가원에 국유·공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2항)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평가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10	안 제16조 (인력의 파견요청)	평가원은 그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거쳐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전문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재량규정
11	안 제22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무규정
12	안 제23조(과태료)	(제1항)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의무규정
13	부칙 안 제2조 (설립준비위원회)	(제1항) 교육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종전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구평가원”이라 한다)의 해산과 평가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설립준비위원으로 구성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항) 설립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조(법인) 안 제3조(설립) 안 제5조(사업) 안 제9조(원장 등) 안 제11조(운영 재원) 안 제12조(출연금) 안 제13조 (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안 제16조 (인력의 파견요청)	—	■ 제정안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교육부 소관 법정법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임 ■ 평가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7본부의 조직과 원장 1명 등 정규직 347명과 비정규직 121명, 파견인력 8명을 보유(23.12.1.기준)하고 있으며, 22년 결산 기준 정부출연금 24,744백만원과 자체수입 145,288백만원 등의 수입을 통해 운영되고 있음 ■ 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제정안에 따른 평가원의 사업내용이 기존 정관 등에 따라 규정된 사업내용과 유사하고, 감사 및 이사회를 제외한 조직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부칙에 따라 기존 재산·권리·의무가 포괄 계승되고, 2023년 현재 사용중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이 없으므로 관련 추가재정소요는 미미할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1] 평가원 조직 및 인력 현황 [참고자료2] 22년 말 기준 수입 및 지출내역
2	안 제6조(임원)	○	
3	안 제8조(이사회)	○	
4	안 제22조(벌칙) 안 제23조(과태료)	×	■ 제정안에 따라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고, 평가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재정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위반 횟수 및 수납액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려우므로 추계가 곤란함
5	부칙 안 제2조 (설립준비위원회)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추계가 어려운 사항을 제외하고 본 보고서에서는 평가원을 교육부 소관 법정법인으로 하는데 따른 ‘임원 관련 보수(안 제6조)’ 및 ‘이사회와 설립준비위원회 설치·운영(안 제8조 및 부칙 안 제2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자체수입으로 충당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추가되지 않을 수 있으나, 제정안의 제안이유¹⁾ 등을 고려하여 추가재정소요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
- (이사 및 감사, 이사회) 제정안은 평가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및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원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할 것을 규정함
 - 이사의 수는 제정안에서 규정한 최대 인원인 11명으로 하되, 1명은 이사장, 1명은 원장으로 하고, 원장과 감사 각 1명만 상근으로 함
 - 이사²⁾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감사의 보수는 교육부가 주무부서인 다른 공공기관의 사례를 준용함
 - 원장의 보수는 제정안 시행 이전의 보수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추계에서 제외하고, 보수 및 수당 이외의 사항은 기존 예산 범위내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보아 추계에서 제외함
- (설립준비위원회) 제정안 부칙 제2조에 따라 평가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데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기존의 평가원과 제정안 시행 이후 평가원의 사업내용이 유사하며, 조직 및 인원의 변동이 크지 않은 만큼 설립준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6개월로 하고, 매월 1회 회의가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함

1) 평가원의 설립근거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서, 국무총리 소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지도·관리를 받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교육정책 집행기관으로서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평가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교육부와 직접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그 성격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제외하고, 교육부 소관의 법정법인으로 규정하여 교육과정 개발에서 각종 교육평가에 이르는 교육정책의 수립·추진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자 함.

2) 이사장은 이사를 대표하는 직위이나 비상근이므로 다른 이사와 동일한 수당을 제공받는 것으로 함

-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점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 2025년 중 상반기는 설립준비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으로 하며, 하반기부터 이사회 및 상임 감사가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가정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이사 및 감사, 이사회 운영비용은 10인의 이사에게 제공되는 위원회 회의참석수당과 상임감사에게 지급되는 연봉으로 하며, 제정안 시행 이전 비상임 감사에게 제공되고 있는 감사수당을 추가재정소요에서 차감함
 - (이사회) 제정안에 따라 이사회는 총 11인으로 구성되나, 원장 1인을 제외한 10인에게 회의참석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함³⁾
 - 주무부서가 교육부인 공공기관(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의 최근 3년간 이사회 회의 횟수 평균값인 8회를 제정안에 따른 회의횟수로 가정하고, 수당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25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함
 - 이에 2025년의 추가재정소요는 $4\text{회} \times 10\text{인} \times 25\text{만원} = 1,000\text{만원}$
 - 2026년~2029년의 각 년도별 추가재정소요는 $8\text{회} \times 10\text{인} \times 25\text{만원} = 2,000\text{만원}$ 으로 도출됨
 - (감사) 제정안에 따라 2023년 현재 비상임으로 운영되고 있는 감사 직위가 상임으로 변경되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주무부서가 교육부인 공공기관(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의 상임감사 보수를 준용하여 연간 156,291천원의 보수가 지급되는 것으로 함⁴⁾
 - 평가원에 따르면 비상임 이사에게 연간 12,000천원(월 10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를 추가재정소요에서 차감함

[표 2] 평가원 감사 관련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감사(상임)	80	165	170	176	182	76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전제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이사장에게도 일반 이사와 동일한 수준의 수당이 제공되는 것으로 가정함

4) 2022년 결산 기준 기본급 및 성과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이며, 이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전망한 명목임금 상승률을 적용함

□ **설립준비위원회** 운영비용은 10인의 위원에게 지급될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계산함

- 전제에서 가정한 것과 같이 설립준비위원회는 총 10인으로 구성되며, 2025년 6개월 동안 활동하되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함
 - 이에 2025년 회의 개최 횟수는 6회이며, 수당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25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함
 - (2025년 추가재정소요) 6회×10인×25만원=15,000천원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8억 7,900만원으로 추계

[표 8] 의과대학 운영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¹⁾	2026	2027	2028	2029	합계
설립준비위원회 (부칙 안 제2조)	15					15
이사회 (안 제8조)	10	20	20	20	20	90
상임감사 (안 제6조)	80	165	170	176	182	773
합 계	105	185	190	196	202	879

주: 1) 설립준비위원회가 6개월동안 활동한 뒤 하반기 6개월 동안 상임감사 및 이사회가 활동하는 것으로 가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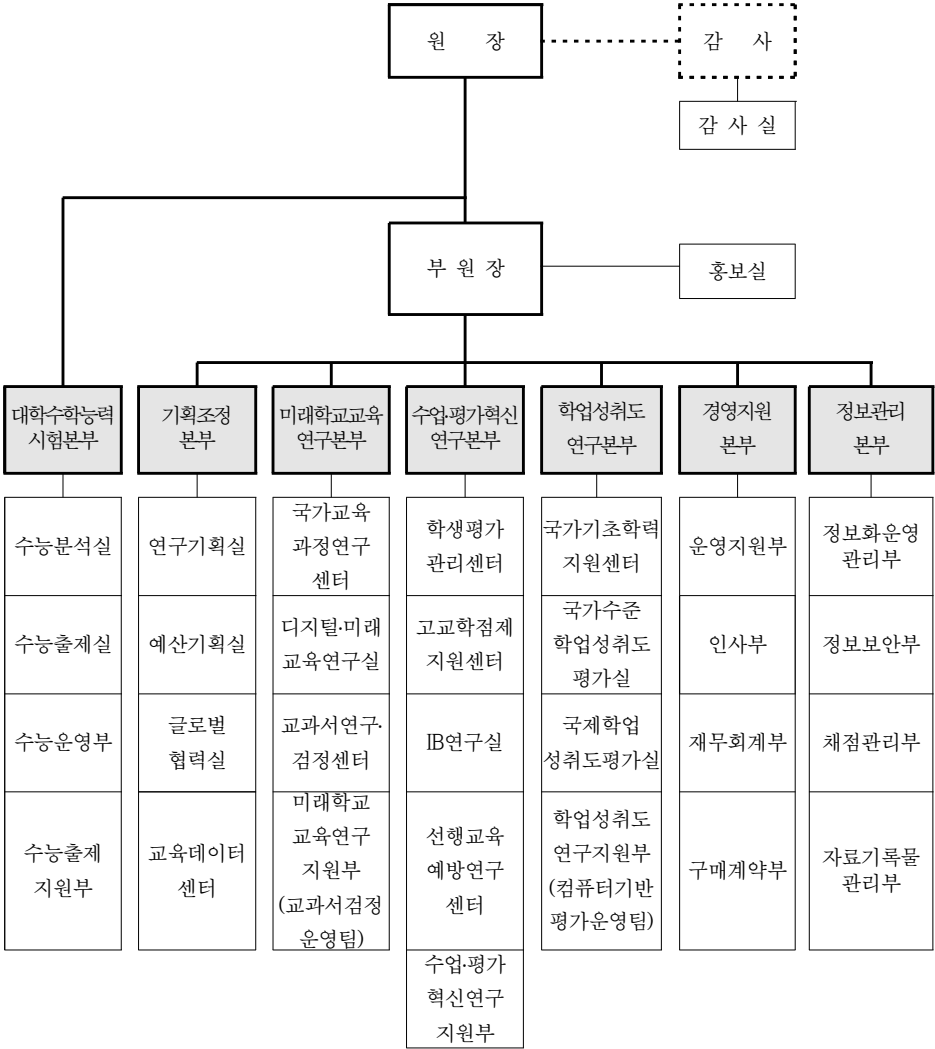
□ 성명

국회의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

[참고자료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조직도 (2024.1.1. 시행예정)



[참고자료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인력현황

○ 정규직 정원 현황

(2023.12.1. 기준, 단위:명)

합계	원장	연구직	행정/전문직	무기계약직	청사운영직
347	1	184	93	42	27

※ 별도정원(연구직 3, 행정·전문직 1) 제외
※ 비정규직 현원 : 121명 (연구직 62, 일반직 54, 인턴 5)
※ 파견 인력 현황 : 8명(파견교사, 중등)

[참고자료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2년 말 기준 수입 및 지출내역

(단위: 백만원)

수입				지출			
구 분	22 최종 예산(A)	22 결산 (B)	증감 (B-A)	구 분	22 최종 예산(C)	22 결산 (D)	증감 (D-C)
합 계	164,589	186,544	21,956	합 계	164,589	186,544	21,956
I. 정부출연금	25,499	24,744	△755	I. 인건비	28,912	27,298	△1,615
1. 정부출연금 편성	25,499	24,744	△755	II. 연구사업비	130,494	118,898	△11,597
가. 인건비	20,138	19,383	△755	가. 기관고유사업비	3,933	3,221	△712
나. 기관고유사업비	2,852	2,852	—	나. 일반사업비	1,172	1,157	△15
다. 일반사업비	1,076	1,076	—	다. 수탁용역사업비	66,905	66,905	—
라. 경상운영비	1,433	1,433	—	라. 정부대행사업비	58,132	47,290	△10,841
마. 시설비	—	—	—	마. 청년인턴쉽운영	353	325	△29
2. 정부출연금 대체(△)	—	—	—	III. 경상운영비	3,270	2,848	△421
II. 자체수입	122,581	145,288	22,707	IV. 시설비	—	—	—
1. 수탁용역수입	76,159	97,708	21,549	V. 기타(차입금상환 등)	—	—	—
—직접비	66,905	81,578	14,673	VI. 연구개발적립금	1,912	1,912	—
—간접비	9,254	16,129	6,876	VII. 결산잉여금 처분		35,588	35,588
2. 정부대행사업수입	45,696	46,319	623	VII-1. 집행처분		17,343	17,343
—직접비	45,414	46,036	623	가. 수입대응지출직접비		14,673	14,673
—간접비	282	282	—	나. 퇴직급여충당금		—	—
3. 이자수입	168	709	541	다. 능률성과급 재원		2,047	2,047
4. 기타수입	558	553	△6	라. 기타집행처분㉑		—	—
—직접비	281	281	—	마. 기타이월처분㉒		623	623
—간접비	277	271	△6	VII-2. 차기이월금		18,245	18,245
5. 청사보증금 및 매각 잔액	—	—	—	가. 연구개발적립금		5,533	5,533
6. 출연금 대체	—	—	—	—자체수입초과분		5,364	5,364
III. 전기이월금	14,596	14,596	—	—종료사업 집행잔액분		165	165
1. 이월금 규모	14,596	14,596	—	—연적금 이자 발생분		3	3
2. 출연금 대체	—	—	—	나. 동일항목이월		12,713	12,713
IV. 융자금회수	—	—	—				
V. 차입금수입	—	—	—				
VI. 당기 연구개발적립금	1,912	1,916	3				